

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019
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7. .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사유

-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구 명서동 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코자 의안으로 제출함

2. 위탁 필요성

-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정보·문화·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
-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“끼” 발산과 수련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청소년전문인력이 확보된 청소년단체에 위탁관리가 필요함

3. 위탁개요

- 위탁운영대상 시설
 - 시설명 : 제천청소년문화의집
 - 위치 : 제천시 서부동 353번지
 - 주요시설물

구 분	면 적	배 치 시 설
제	$435m^2$	
제 1 층	$171m^2$	◦ 안내실, 정보검색실, 도서열람실, A/V, CD부스, 창작공방
제 2 층	$171m^2$	◦ 다목적실, 동아리방
제 3 층	$93m^2$	◦ 영상스튜디오실, 영상편집실

○ 위탁운영 조건

- 수탁수수료 : 무 료(비) 수익시설임)
- 운영관리비 : 92,400천원/년 정도

구 분	단 가	금액(천원)	비 고
계		92,400	
인 건 비	1,100,000×12월×2명	26,400	청소년지도사2명
공 공 요 금	2,500,000×12월	30,000	전기(냉난방기사용),인터넷전용 사용료등
시설장비유지비	2,000,000×12월	24,000	무인경비용역료포함
일 반 운 영 비	1,000,000×12월	12,000	도서, CD, 정기간행물등 구입, 사무용품비 등

- 위탁관리기간 : 3년간
- 운영계획(안)
 - 운영시간 : 09시 ~ 22시
 - 휴관일 : 매주 월요일, 신정·설연휴, 추석연휴

4. 수탁자 선정기준

- 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청소년단체로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“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”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자 선정

5. 관계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
- 청소년기본법 제57조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
-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~제7조

6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사본
- 사업추진현황

관 계 법령

청소년기본법

제18조 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7조 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,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.

청소년활동진흥법

제16조 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천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

제3조 (시설운영) ①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가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, 기간등을 명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.

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,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

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 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 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 대상사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사 업 추 진 현 황

- 창의적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
- 다양한 문화와 정보 교류 및 소질 계발로 민주시민의식 고양

□ 사업 개요

- 위치 서부동 353 (구 명서동사무소)
- 규모 부지 556m² / 건축연면적 435m² (131평)
- 사업기간 '05. 3월 ~ '05. 8월
- 총사업비 510백만원(도비 352백만, 시비158백만)
- 시설 내용
 - 도서실, 정보검색실, 창작공방, 다목적실, 영상스튜디오, 영상편집실

□ 추진실적

- 리모델링공사 착공 : '05. 3월
- 건축설계변경 (3층 증축) : '05. 6월
- 관련조례 개정 : '05. 6월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리모델링공사 완공 : '05. 7월 말
※ 현재 실내 내부 마무리 작업중
- 기자재 및 비품 구입 : '05. 7월 말
- 위탁운영자 선정 및 개관 : '05. 8월 예정

□ 기대 효과

-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
⇒ 청소년 스스로 건전문화 주체로서의 창의력 계발